

2022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1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④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0,000원)×6%×(1-55%)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5 ③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에서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① 나.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다. 지상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르.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7 ③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물기부금에 대한 평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8 ④ 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익금불산입한다.

9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0,000,000	임의평가증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90,000,000	

10 ③ 납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11 ③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12 ② 보석과 자동차는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담보의 종류

납세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장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13 ④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해당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14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하며 사업의 개시나 폐업과는 무관하다.

*사망한 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 1.1.~사망일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 : 1.1~출국일

15 ④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 소멸시효 정지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16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7 ③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10+20 \times \frac{200}{300+200} = 18\text{만원}$$

18 ④

①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9 ③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0 ② 뇌물등을 제외한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과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다.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1. 산업재산권 양도-60%의제필요경비 300만원-Max[150만원,180만원]=120만원	
	2. 문예창작원고료-60%의제필요경비 300-Max[100만원,180만원]=120만원	
	3. 일시강연료-60%의제필요경비 400만원-Max[100만원,240만원]=160만원	
	합계 : 400만원	

●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비과세